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9.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9월 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9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5. 9.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신설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적용, 명문화하여 낭비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 신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 다량배출사업장 범위관련 조항 수정

- 현행 다량배출사업장의 근거 법조문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안 제2조제3호)

※ 시행규칙 제16조의 내용변경으로 다량배출사업장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

- 다량배출사업장을 업종에 따라 일괄 제외하는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침 시달된 바,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휴게음식점을 면적(250㎡) 기준으로 예외규정을 변경

○ 법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신설에 따라 조례 서식 등 변경

- 감량의무이행계획서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의 3, 서식 4의 4)
- 신고필증 ⇒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의 5, 서식 4의 6)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35의 2, 서식35의 3)

○ 다량배출사업장의 “공동처리” 규정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령의 조문을 원용토록 규정

-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을 통일화시키기 위하여 조례 별표 3의 규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령 조문 원용토록 서울시 지침이 시달된 바,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원용토록 조례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 준칙안을 근거

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극소수량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장 면적 250㎡ 미만의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발생억제나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함.

○ 과태료 부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처리 계획 신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조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원용토록 삭제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취지에 맞도록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77 호
----------	--------

제출연월일 : 2015.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음식물류폐기물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신설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적용, 명문화하여 낭비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 신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다량배출사업장 범위관련 조항 수정

- 현행 다량배출사업장의 근거 법조문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안 제2조제3호)
※ 시행규칙 제16조의 내용변경으로 다량배출사업장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

- 다량배출사업장을 업종에 따라 일괄 제외하는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침 시달된 바,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휴게음식점을 면적(250m²) 기준으로 예외규정을 변경

다. 법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신설에 따라 조례 서식 등 변경

- 감량의무이행계획서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의 3, 서식 4의 4)
- 신고필증 ⇒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의 5, 서식 4의 6)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35의 2, 서식35의 3)

라. 다량배출사업장의 “공동처리” 규정 신설

마.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령의 조문을 원용토록 규정

-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을 통일화시키기 위하여 조례 별표 3의 규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령 조문 원용토록 서울시 지침이 시달된 바,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원용토록 조례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있음)

- 제10조의2(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감면대상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이 현금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어, 감면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선언적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의견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5. 7. 09 ~ 7. 29,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시행규칙 제16조”를 “시행령 제8조의4”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에 대해서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를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

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에 의한”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10조의2 중 “때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를 “때에는 감액처리하거나 현물 등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역”을 “구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 계약에 의하여”를 “해당 계약에 따라”로, “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구역”을 “구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할”을 “처리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을 “다량배출사업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를 “설치·운영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조하려면”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으로, “**1월말**”을 “**1월 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으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을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으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을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9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3과 같다**”를 “**영 제38조의4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영·규칙**”을 “**법·영·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시행령 제8조의4</u>----- ----- ----- -----<u>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에 대해서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u></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신 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

④ -----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

⑤ -----
-----.

1. (생 략)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

1. (현행과 같음)

2.-----(「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⑥ -----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으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0조(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제1항에 의한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0조의2(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 및 지원할 때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감면) -----
-----음식물류 폐기물-----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 -----

-----때에는 감액처리 하거나, 현물 등으로-----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 -----구역 안-----

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

-----.

② -----

폐기물처리신고자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해당 계약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
구역 안

-----.

② -----

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을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

-----처리하
-----고자 하는-----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

1. -----

폐기물처리신고자-----
-----설치·운영자-----

-----.

2. -----건
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생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

1.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6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

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

4.-----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1월 말-----
-----.

5.-----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4서식)-----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

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1.-----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 2.-----폐기물처리신고자-----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 ① -----영
제38조의4 규정에 따른다.
- ② -----
-----법·영·시행규칙-----

-----.

현행		개정안		
<p>〈별표3〉</p> <p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 관련)</p> <p>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p> <p>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p>		<p>〈삭제〉</p>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p>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p> <p>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p> <p>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p> <p>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의2)</p> <p>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p> <p>라.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10</p> <p>20</p> <p>20</p> <p>50</p> <p>50</p> <p>50</p> <p>50</p> <p>50</p> <p>100</p>	<p>20</p> <p>30</p> <p>70</p> <p>70</p> <p>70</p> <p>70</p> <p>70</p> <p>70</p> <p>300</p>	<p>30</p> <p>50</p> <p>100</p> <p>100</p> <p>100</p> <p>100</p> <p>100</p> <p>100</p> <p>500</p>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삭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즉시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⑥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부산물 처리								
	⑫ 처리방법	⑬ 처리능력	⑭ 설치 신고일자	⑮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⑫ 자가재활용계획	⑬ 재활용량		⑭ 재활용방법			⑮ 재활용장소								
		kg/월												
⑯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⑰ 위탁 재활용량	⑱ 위탁 계약비용	⑲ 위탁 업소명	⑳ 업 종	㉑ 재활용 방법	㉒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 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㉓														

(뒷면)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⑰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⑱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 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_____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용			
		자가 처리 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출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구 도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p>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삭제>